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혜연힐링케어복지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름.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례법령에 따른다.
-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②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소득세법」제59조의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⑦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시 부재는 예외)
 -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고지
- 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⑥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